



시간제등록생 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4-1-41
제정일자	2011.11.21
개정일자	2019.11.14
책임부서/팀·계	평생교육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6조2에 의거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,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간제등록생들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, 시간제등록생의 특성화 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구성) ① 위원장은 본 대학 평생교육원장이 되고,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시간제등록생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17.12.12 개정>

제3조(임기)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<17.12.12개정>

제4조(회의소집) 시간제학생 운영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.

제5조(시간제등록생 운영위원회의 기능) 시간제학생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간제등록 학생들의 선발
2. 시간제등록 학생들의 학위 수여
3. 시간제등록 학생들의 계절학기 운영
4. 시간제등록 학생의 특성화 방안 연구

제6조(의결)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17.12.12. 개정>
<2019.11.14. 개정>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불미 된 운영세칙은 시간제등록생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